

미국언론에서의 변호사에 의한 기사심의

존 라일리

워싱턴에 있는 윌리엄 앤드 코넬리 법률사무소의 데이비드 E.켄도르씨, 또는 그의 동료 한 사람은 매주 한번 시계에 맞춘듯이 정확하게 플로리다주 랜타나에 항공편으로 출장, 발행부수 478 만부의 고심주간지인 내쇼널 엔콰이어러지(1926년 창간)를 읽는다. 근년에 와서 미국에서는 매스컴이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일이 없도록 그 수호신으로서 기사나 방송프로의 내용을 사전심의하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켄도르씨도 그러한 변호사들 중의 한 사람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명예훼손소송의 위험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그러한 추세 때문에 켄도르씨와 같은 변호사들은 많은 신문사의 편집국에서 「방어보도」의 관행을 제도화하는 일을 통해 미국저널리즘의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신문기자들을 위해 격식에 따른 명예훼손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 명예훼손소송이 일상적인 일로 됨에 따라 비밀정보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사에는 「스톱」(stop)의 사인을 낸다. 그리고 기사에 관해 사내에서 오고 간 찬반론에 관한 기록은 보존하지 않도록 한다. 원고는 손질이 가해진 후 공정한 스타일로 만들어진다. 즉 부인이나 반응을 강조하고 사실과 의견은 명확하게 구별하며 출처를 첨부하여 「자극적인」 동사나 형용사는 삭제한다. 이러한 고심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사전심의는 모험적인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 「때로는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켄도르씨는 말한다. 이렇게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느낌을 뉴스보도기관의 기사를 심의 또는 「점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만 한한 일은 아니다. 실제로 영서, 도큐멘터리 드라마, 픽션, 논픽션의 책에 이르기까지 정보산업전반에 걸쳐 법률적 점검을 하는 일이 표준적인 작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저작권침해, 프라이버시 소송 등 많은 문제리스트 중의 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사 편집국에서는 최량의 기사가 가장 위험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조언이 일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 대 설리반사건의 연방대법원판결(1964년) 결과, 프레스측으로서는 비교적 안정된 시기가 도래했었다. 그 판결의 골자는, 「공직에 있는 인물」(Public Officials)은 보도쪽이 현실적 악의를 가지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승소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후의 판례에서는 「공직에 있는 인물」의 범위가 「공적 인물」(public figure)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공적 인물」이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며, 또 현실적 악의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가 유효한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격적인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편집과정에 대한 광범위하고 값비싼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프레스담당 일부 변호사들에 의하면 통계적으로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지 않지만 재판전에 소송을 취하시키는 일은 어렵게 되어 있으며 배심원이 평결 및 손해배상금의 어느쪽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뉴스업계에서는 확실히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명예훼손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크고 작은 회사들에 대한 소름이 끼칠 정도의 손해배상청구 소문까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사전심의되고 있는 기사의 수가 1964년 또는 1974년에 비해 몇 배나 늘어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롤드 W. 퓨존 주니어씨(샌디아고 유니온 앤드 트리뷴 발행인)는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마감시간이 임박해서 조언을 하는 변호사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여하튼 편집국 소속의 변호사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10년간의 연방대법원판결(미디어측에 유리한 결정은 1건 밖에 없다)이 하나하나 쌓여진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제임스 C. 굿데일씨(뉴욕의 디비보이즈 앤드 프린프톤 법률사무소)는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나는 22년전부터 사전심의를 해오고 있는데, 당초 뉴욕 타임즈에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다른 매체에서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1970년대초에는 사전심의를 받는 기사가 거의 없었으나 그 이후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변호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신문사에서는 경비와 편익을 고려하여 법적 심의기능을 사내에 두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또 친근해질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퓨존 발행인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어느 곳에서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신문사에서는 외부의 변호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로버트 D. 사크씨(뉴욕의 피터슨 벨크나프 웹 앤드 테일러 법률사무소)는 외래의 고문변호사로서 21년 동안이나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점검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이 사내가 아닌 사외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은 신문사로서의 의식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 아마 신문의 독립성을 우선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보도기관은 어떤 기사를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침도 여러가지로 다르게 한다. 예를 들면 타임지와 같은 뉴스주간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기사를 심의한다. 그러나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편집인이 심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 사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단순하다. 변호사에게 사전심의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그 기사를 보내주면 된다」 변호사가 사전심의기관으로 등장하게끔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미디어측에 경계심이 높아졌다는 반영이긴 하지만 자신들은 결코 검열관도 아니며 명예훼손소송을 없도록 하는 보증인도 아니라고 편집국 담당의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굿데일 변호사에 의하면 「어떠한 주장이나 사상도 결코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첫째가는 원칙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기사작성에 협력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낀다고 말하고는 있으나 개중에는 기사를 점검하는 분야에 전문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이 문제는 군소 신문사의 경우 특히 중대하다. 「로컬지 단계에서는 두뇌가 좋지 않는 발행인이라도 일반의 변호사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레지스터지(매사추세츠주)의 발행인이자 변호사인 바리 N. 파스터씨는 그 고장의 변호사로서는 마음에 차지 않아 스스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신문사의 전속고문변호사가 기사의 점검까지 할 경우 그 결과는 결정적으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조사보도의 권위자로 뉴스데이(뉴욕주)의 편집국 차장인 보브 그린씨는 「고문변호사들은 어떻게 '피소될만한 기사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자'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뉴욕에 있는 다운리 앤드 업다이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의 「언론자유기자위원회」의 위원장직을 15년간 맡고 있다가 최근 사임한 작크 랜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변호사는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의뢰인은 발행인이며 따라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 변호사가 편집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개 발행인이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다짐을 해두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사전심의는 결코 올바른 구제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큰 화제가 되었던 CBS, 타임, 워싱턴 포스트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소송에 서는 3사 모두 변호사가 사전심의를 하고 있었다. 모빌사 사장의 기사가 게재된 뒤 워싱턴 포스트의 전속고문변호사가 된 보이스프렛드 존즈 주니어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사전심의는 사실이 공정하게 제시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고소에 대한 보험증서로 의도된 일은 없었다. 또 소송이 재판에 계류되면 배심원이 흑을 백이라고 평결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점검에 의해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작업은 잘 진행되었을 경우 편집인이나 기자와의 사이에 적대적이 아닌 협조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편집기능과 법적 심의기능간의 선이 미묘하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켄도르 변호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변호사는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은 피하고 법률면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점에서 편집과 법적 기능은 교차한다. 현실적 악의라든가 사실과 의견과의 구별 등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론의 전문적인 뉘앙스에 대해 이해를 갖는다는 <변변치 않은 역할>이 변호사의 점검작업에는 있다. 그러나 점검작업의 핵심은 추궁하면 곤궁에 빠질 만한 약점을 찾아내 경험과 직관에 의해 뉴스 기자의 저널리스트로서의 논리를 시험해보는 일이다.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왕은 벌거숭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한 심정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사려분별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거꾸로 지나치게 대담해질 수가 있다. 변호사들은 모든 기사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어떤 종류의 문제는 꽤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자주 마주치는 종류의 문제에는 정보원이 관련되어 있다. 정보원제공자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 모른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자들은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여방적인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변호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랜도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노트나 기억, 혹은 신문기자에 대한 사회의 신용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 중요한 담화가 있다면 테이프에 녹음하든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회화내용을 다른 기자가 방청하도록 해야만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정보원은 더 큰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USA 투데이 외에 12개 일간신문의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주디스 R. 에프스타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뉴스기관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적신호는 정보원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정보원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실제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 이유는 변호사들에 의하면 아주 간단하다. 오늘날 명예훼손소송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정보원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불리한 판결이 나오든가 잘 된다 하더라도 「당해기사에는 정보원이 없다」는 배심원단에 대한 재판관의 실시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장애는 아니다. 여상되는 정보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으로 그런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그 첫째는 기자에 대해 다시 한번 정보원과 만나 소송의 진행향에 따라서는 「조건부」로 이름을 밝힐 수 있다는 동의를 정보원으로부터 받아두도록 강력하게 권유하는 일이며, 둘째는 정보원이 말한 내용을 입증할 방법을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건부로 정보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많이 했었다」고 에프스타인 변호사는 밝히고 「기자와의 논의도 때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구멍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상적인 언설의 정보원을 확인하고 검토하는일이 사전심의를의 핵심이라고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부 변호사에 의하면 논의의 표적이 될 만한 상황에 관한 기사의 경우 소송의 불씨를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 기사의 완전성을 희생하더라도 그다지 관련이 없는 인물의 이름은 쓰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송이나 배심원의 적대적 반응은 기사의 스타일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일부의 변호사들은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기사의 스타일은 심의의 대상이 된다. 퓨존 발행인은 「우리는 모두 공정성에 관해 일종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유쾌하지 않은 때가 있다. 왜냐하면 검열관의 입장에 서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워드 M. 스퀴드론 변호사는 「소송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기사의 작성방법과 그렇지 않은 작성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거리낌없이 두번째 방법을 권유한다」고 말한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의 전속변호사인 존즈씨는, 기사의 「스타일」은 잠재적 원고 뿐만 아니라 재판관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일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 악의의 인정은 아니고 기사의 공정성에 대한 재판관의 직관에 의해서 약식재판을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사작성방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리스 타임즈의 전속고문변호사인 제프리 S. 크라인씨는 기사가 어디서 나왔는지의 설명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쟁점에 대해 기자는 찬반 어느쪽에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도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터슨 베르크나프 법률사무소의 삭크씨는 잠재적 원고측의 말을

써두는 것이 소송을 단념시키는데 있어 불가결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월 스트리트 저널의 심의에 대해 「반론이나 부정을 더 크게 취급하는 편이 좋다는 의견을 펴는 일이 적지 않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작성방식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저널리스트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뉴즈데이의 그린 편집국차장은 일반론으로서 여방조치로서의 사전심의를 찬성하고 있지만 변호사들은 지나치게 신중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린 차장은 그 예로서 「말했다」 (said)와 「인정했다」 (admitted)는 두 동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스스로 자진해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증거를 들었기 때문에 용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는 경우는 <인정했다>고 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정확하지 않은데도 <말했다>는 편에 기우는 경향이 있다」 . 불필요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하는 일은 「저널리즘의 향상」 에 유익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린 차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어떤 기사를 부드러운 리드로 시작해 놓고는 중간쯤에 가서 모씨가 1 천만달러를 훔쳤다는 사실을 숨겨놓듯이 기사화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변호사들 중에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 사전심의에 관계하고 있는 변호사의 대부분은 과거 10 년간 명예훼손법에는 위험한 경향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공교롭게도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가 이를 위해 심의방법을 특별히 변경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있다. 데이비드 J. 브란슨(워싱턴에 있는 케이 쇼러화이만 헤이즈 앤드 핸드러 법률사무소의 워싱턴 주재원 : 칼럼니스트인 잭 앤더슨 등의 의뢰인을 위해 사전심의업무를 하고 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판의 경향이 신문측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 또 에프스타인 변호사는 「신문측은 방대한 소송비용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우리들 변호인측으로서는 지금까지 해 온 방식대로 계속할 뿐」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사점검작업이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진 것은 아니다. 퓨존 변호사는 「우리들의 사전심의작업에는 시속 35 마일이라는 식의 속도제한 같은 것이 있을리 없다. 법령집만을 보고 이것은 OK, 저것은 안된다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굿데일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자. 「기사의 사전심의라는 작업은 아주 어렵고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러한 작업을 경험한 일이 없는 사람들과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작업이 단순히 이런 저런 단어를 삭제하는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과연 알게 할 수 있을 것인지」 . (본고는 미국의 내셔널 로우 저널지의 존 라일리 기자가 쓴 것으로 처음에 내셔널 로우 저널지에 게재된 다음 미신문편집인협회 = ASNE = 기관지 「블리턴」 1985년 9 월호에 게재되었었다)